

一線 養護教師의 辭

양 창 귀

(大田 삼성국민학교 양호교사)

本稿에서는 養護教師 업무의 理論과 그 實際에 관해 논의코자 하는바 學校保健 측면에서의 養護教師의 概念定義, 역사와 임무, 그리고 현행 양호교사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책을 찾아 보고자 한다.

養護教師란 學校保健의 가장 핵심적인 인력으로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건강에 관한 모든 교육활동을 관장한다. 다시 말하여 養護教師는 어린이가 현재 또는 장래에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실천 능력을 기르고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助長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동시에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教職員의 健康을 유지·증진 시킴에 그 존재 이유가 성립된다.

個人健康·國民健康의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라나는 세대의健康管理를 맡고 있는 養護教師의 任務가 증대되고 그 중요도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養護教師의 歷史는 學校保健의 역사와 백을 같이 하므로 학교보건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우리 나라 學校保健概念은 19C 말 근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출발되었지만 그 규모나 수준상으로 보아 養護나 保健이라는 개념에 너무 미흡하고, 사실상 오늘날과 같은 개념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의 戰後復舊 과정으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法制上으로 나타난 것은 1949년 '敎育法'으로부터 비롯 '學校保健法'으로 발전했다.

'學校給食法' '傳染病豫防法' 등을 근간으로 한 이 '學校保健法'의 施行令이 제정·공포된 1969년은 韓國 學校保健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學校保健의 실제 수행인으로서의 養護教師가 법제화된 것은 1953년부터이지만, 고용직에 불과 하던 것을 정식교사로서 임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부터이다. 이렇게 공무원 임용법에 의거한 養護教師 任用이 시작됨으로써 학교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전문적으로서의 양호교사가 수행케 되었다.

養護教師의 주요 업무 내역을 세별해서 나열해 보면 保健教育, 身體檢查, 體質檢查, 痘病検査, 給水管理, 環境衛生, 學校給食, F·A(응급처치) 등을 위한 양호실 운영 등이다.

이제 本稿의 핵심으로서 일선 양호교사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과 개선책을 記述해 본다.

1. 學校保健의 核心人力으로서의 養護教師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학교보건 관계 직원의 직무에 관한 규칙'에 나타난 학교보건 인력으로는 학교장, 체육(주임)교사, 학급 담임 교사인 교원, 학교의, 학교교사, 양호교사, 영양사 등의 보건 관계 전문 인력으로 하여 體育教師와 學級擔當教師를 學校保健人力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體育教師는 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여 체육뿐만 아니라 보건교육도 담당하고 이에 관해 일반 교사에게 지도·조언하며, 학교

의 연간·월간 보건관리 계획의 수립과 학교 보건 관계 직원간의 연락·조정을 맡도록 함으로써 행정상 養護教師를 體育教師의 관할권 하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상의 學校保健専門人力을 살펴보면, 간호원인 양호교사가 그 실질적인 核心人力이 되고 있다. 즉, 전문인력 가운데 유일한 교사이며, 학교의 常勤者이다.

그 配置基準을 보더라도 '양호교사는 각급 학교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두 1인을 둔다(학교보건법시행령)'고 하여 學校保健의 必須要員이며 핵심 전문요원임을 암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법제상에 명확한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문교부 규칙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오히려 體育教師가 學校保健의 핵심 인력처럼 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법령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은 養護教師에게 직접적인 보건 서비스 뿐만 아니라 學校長의 학교보건 직무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역할·보좌역할로서 學校保健의 기획 조정·통제 기능을 養護教師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의 추진과 함께 양호교사 스스로의 바람직한 역할 모형 제시와 학교 실정에 맞는 독자적·창의적 활동을 통해 學校保健의 核心人力으로서의 인식을 새롭게 한다.

2. 어린이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킴이 養護教師의 가장 큰 임무이다.

이의 한 방법으로 年 1회 體質検査를 실시하고 있다. 형식에 그치지 않는 세심한 체질검사 과정에서 異常兒를 색출, 종합병원 전문의와의 연계를 통해 빠른 治癒를 도모하는 바 보다 효과적인 친료 혜택을 위해 단체적 차원에서 시·도 양호교사회와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互惠의紐帶 강화가 요구된다.

養護教師는 또한 豫防時代에 접어들어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에 관한 保健知識教育의 실시와 情報提供者로서의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자칫 무사안일 주의에 빠지기 쉬운 나태에서 탈피한 養護教師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부단한 연구 자세가 요청된다.

3. 養護教師의 資質向上과 社會奉仕活動參與

養護教師의 자질 향상 노력으로서는 年 1회補修教育 등이 행해지고 있지만 보다 고차원적

인 요구로서 1次 診療員 수준으로의 자질 향상을 요구한다. 단순한 응급처치 단계에서 벗어난 治療·豫防能力의 고양과 함께 방대한 조직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의 대행자로서 활용, 고급 인력의 社會奉仕에의 參與를 꾀한다. 이를 위한 養護教師 스스로의 자질 향상 노력과 함께 행정당국의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4. 金花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나타나듯이 法制上 우리나라 養護教師의 配置基準이 '教育法施行令'과 '學校保健法施行令' 사이에 차이가 있다.

前者에서는 18학급 이상 국민학교에 1인을 두어야 하고 중·고등학교와 18학급 미만의 無醫村 국민학교에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반해 後者는 학급수에 관계없이 각급 학교에 1인을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학교 養護教師 1인당 학교수는 1964년 8.5학교가 1982년에는 4.5학교이며, 학생수는 1964년 8,038명 1982년은 3,803명, 학급수는 1964년 121.4학급, 1982년 77.9학급이며, 교사수는 1964년 128.3명, 1982년 86.7명으로 양호교사의 심각한 업무과중 현상을 볼 수 있다.

물론 養護教師의 배치에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률 향상을 위해 양호교사의 1人 1校 배치가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1인 담당 학생수를 18학급 기준으로 하여 1,000명선으로, 1인 1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급수에 의한 양호교사의 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되길 요망한다.

5. 養護教師의 奨學業務를 관장하는 奖學體系의 系統化가 시급함을 제언한다.

앞에서 법제상 養護業務의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했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 養護教師의 사기 양양과 효율적 奖學業務 수행을 위한 양호교사 출신 정학자의 배치가 요구된다. 現在 社會體育課에 의해 奖學指導가 실시되고 있는 바 전문직이라는 특수성에 부합되게 養護獎學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행정인과 무수 행인의 一元化를 피해 보다 효율적 體育教學을 양호교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